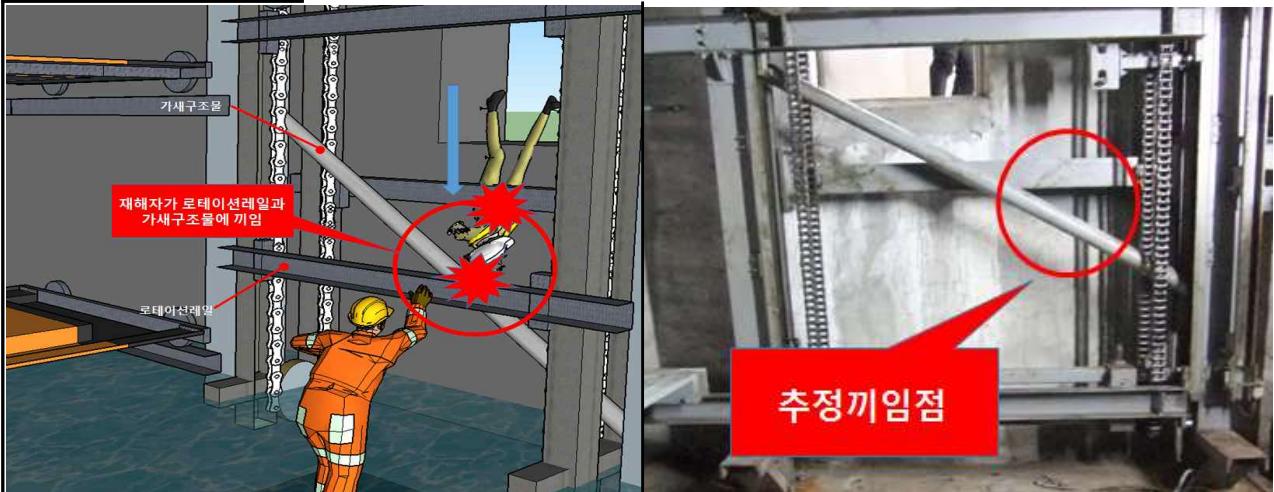


기계식 주차장 배수작업 중 작동으로 인한 끼임사고

재해개요

2018년 7월 4일 18:00경 서울시 강서구 소재 **빌딩 내 기계식 주차기에서 사업주와 재해자가 배수 작업을 위해 기계식 주차기가 설치된 지하 1층 바닥에 양수기를 설치하던 중, 기계식 주차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재해자가 가새구조물과 로테이션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.

재해발생 상황도



* 추정상황도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음

재해발생 원인

○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조치 미실시

- 사고 당시 사업주는 전원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(정지조치 미실시) 조작반 덮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기가 설치된 지하에서 작업 중 사고 발생.
- 해당 건물의 차주들이 직접 주차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“수리·점검 중, 작동금지” 등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, 제 3자가 조작반을 작동해 주차기가 움직이면서 사고 발생.

예방대책

○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조치 철저

- 기계설비에 이상이 있어 정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전원 열쇠를 통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.
- 또한 타인이 정비 등의 작업 중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(조작반)에 잠금장치를 하고,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“수리·점검 중, 작동금지” 등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.